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료근로자 상호간의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에 대해서 정부는 보험급부를 행하여도 가해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동료'란 동일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상호를 말하며 또한 구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민법 제715조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이 당해 사업의 집행과 관련 근로중의 동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어느 근로자가 사적인 용무로 가족과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행락지로 가는 도중에 운전을 잘못하여 근무중인 동료근로자를 부상을 하였더라도 가해근로자의 사용자가 민법 제715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제3조의 운행공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구상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882-3)

Q B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A는 구상을 당하는 것인지요?

A 말할 것도 없이 근대적 노동관계의 실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많은 사람이 일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다수 근로자의 조직적 공동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의 발생이 동료근로자(상사나 부하도 포함한다)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해행위를 한 자는 노재보험에서 말하는 제3자

에 해당하며, 피재근로자는 가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자는 물론 그 사용자가 민법 제715조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공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사용자에게 구상한다면, 근로자상호간의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재해에 대해서도 노동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하여금 그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재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험급부액을 새로이 부담시킴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4년 전 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자는 월2푼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A는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로부터 원금과 그 동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귀하가 A에게 대여한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례는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의 변제로써 소멸

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2.16. 64머1731, 1996.9.20. 96다25302).

따라서 귀하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원금 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고,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5.14. 91다7156).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러한 신체증상들에 의해서도 정신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나 일부에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퇴행기 우울증으로서 비현실감, 건강염려증, 허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인생을 바쁘게 무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로써 꼼꼼하고 착실하고 양심적으로 친구도 별로 없이 비사교적으로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

이러한 갱년기의 치료법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압법이 있다.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ujhbang.co.kr

여성갱년기

갱년기란 여성의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경계를 명칭하는 것으로 여성이 보통 40~50세 사이에 난소 기능이 생리적으로 감소, 또는 폐쇄되는 기간을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폐경 전후의 수년간을 말하는 데 기간은 전후 대략 5년 정

도이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채롭다. 이 시기의 여성에서는 불안, 긴장 기분이 좋았으나 나뻣나람, 안절부절, 우울, 불면, 어지러움, 눈물이 저절로 자주 쏟아짐, 성욕의 증감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두통, 팔다리가 추심, 피부나 점막들이 위축됨, 성교시의 통증등이 나타나며, 이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청소년의 사름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은 이성교제를 연애라고 하지 않고 "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올바른 사랑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폭을 넓혀가는 바람직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청소년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랑을 하기 힘든 이유는 현재의 어른들은 바람직한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에 가르치기 힘들고 TV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등의 보도를 실 새 없이 들으면 행복한 가정이 없는 듯한 비쳐지고 있

니다. 또한 사회분위기가 새벽까지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문화, 주태가까지 파고드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들의 난립도 이유가 됩니다.

TV드라마 또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신데렐라 콤플렉스, 삼각, 사각관계 불륜 관계 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사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방과후에 보살펴줄 국가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선 먼저 가정에서 가장장적인 가정폭력이 사라지도록 부와 모가 동등하게 인권이 존중되는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성문란 풍조를 바로잡아 바른 성 문화가 우리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여성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였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임상병리과 과장 김동렬



관절염과 구분을 하기 위해 관절에서 관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치료로는 크게 약물치료(경구 약물, 크림, 패치제, 주사요법)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누어진다. 이중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심한 급성기 통증의 경우에는 경감될 무렵까지 운동을 당분간 쉬어야 한다. 이때에는 지팡이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이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으로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집 안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관절주위 근육강화운동(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운동,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굽혔다 펴는 운동) 또한 많은 도움이 된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이제 겨우 나이 오십인데 벌써 퇴행성 관절염 인가요? ②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좌우 대칭으로 오며 손가락 안쪽마디가 통증을 일으키는 반면, 골관절염은 비대칭적으로 한쪽 관절에 주로 오며 손가락 끝 마디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내에 염증이 존재하므로 아침부터 통증

이 발생하는 반면 골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기에 주로 저녁 무렵에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전신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골관절염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통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며 방사선 검사와 혈액검사로 기타 류마티스 질환과 구제적인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원인에 의한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얼마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 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임대 할 경우에 세무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로 되어 있으나 주거도 결합 수 있도록 통상 설계되어 있어 주거 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느냐 아

니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세무 상 처리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는 임대 목적이나 타 사업용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 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1세대 1주 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영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 한다면 세무상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 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에 과세재화를 면 세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환 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법에서 정한 방 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리고 임대료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료 보게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음연 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주택의 임대료 보아 소득세 과세여부를 따질 때 타주택의 임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게되므로 1세대 1주 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 노동부는 6월 8일 금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재정, 행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 ②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사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하며
  - ③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재정상으로 우대하고
  - ④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 제공,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복지 분야에서도 우대하며
  - ⑤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노사관계 골짜기 국가의 불명예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방침 아래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이 같은 우대제도를 지난해 보다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부 제도를 금년에 신설했다.
- ▲ 지난해 보다 강화된 내용 :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가점(우수기업 0.25점→0.5점),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가점(대상 0.5점→1점), 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우대→2.5점),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
- ▲ 금년에 신설된 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1점),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우수기업 및 대상 1점)
  - ※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명칭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변경했다.
-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09개 기업이 신청하여 4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KT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9736)로 문의하면 된다.